

조선후기 碩齋 尹行恁(1762~1801)의 經世的 입장과 정치 路程*

남 윤 덕**

요약

윤행임은 21세의 젊은 나이에 정치생활을 시작하여 1801년 유배되어 賜死되는 19년간의 정치 인생을 걸어왔다. 정조와의 만남은 그의 정치적 노선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얼소통’과 ‘내시노비혁파’ 문제에 대해서는 정조의 탕평적 입장을 대변하는 데 힘썼고, 서학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조가 가까이했던 신서파 남인 세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비교적 온건한 대응과 교화적 정책을 택했다. ‘유성한·윤구중 사건’·‘책 귀짝 사건’·‘신유사옥’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대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三學士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尹集(1606~1637)의 후손인 윤행임의 정치적 목적은 오로지 국가와 왕에 대한 忠誠心으로 일관하였다. 이것이 벽파 호론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낙론의 시파적 정치 행동을 펼친 윤행임의 사상철학과 정치 성향이 구별되는 점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는 석재 윤행임의 경제적 입장과 정치 路程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그의 당색은 주로 낙론 중심의 시파나 호론 중심의 벽파로 보았지만, 그는 어느 당여에도 소속되지 않고 오로지 정조와 그 정책을 철저히 수행하고 계승하는 데 힘을 기울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주제어: 윤행임, 서얼소통, 내시노비혁파, 유성한·윤구중 사건, 책 귀짝 사건, 신유사옥, 탕평

* 이 논문은 2022년 12월 16일 경상국립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 개최한 ‘제7차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I. 머리말

본고는 18·19세기 조선후기를 주 무대로 활동한 碩齋 尹行恮(1762~1801)¹⁾의 정치 활동 전반에 걸친 중요 사건들을 토대로 그의 경제적 입장과 정치 路程을 살피고, 이를 통해 기존 논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그의 정치 색깔을 재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행임은 南塘 韓元震(1682~1751)의 호론적 사상체계 계승하고, 正祖의 지향점을 함께 이루고자 했던 인물로 그의 정치적 성격은 18세기 후반 조선후기 政事의 일면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²⁾ 윤행임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윤조(1995, 248·258-261), 김은숙(2009, 3-23), 이영애³⁾, 이현진(2010, 195-196), 노대환(2011, 291·305-307), 김정자(2018 ; 2021 ; 2022) 등에 의해 일정 부분 다뤄진 바 있다.

김윤조는 윤행임을 老論 時派로 인식, 그의 정치 행력의 대체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낙론 시파라는 가정 하에 벽파의 논리였던 호론을 수용한 것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김은숙은 윤행임의 사환기 교류관계를 분석하여 대대로 충절 집안 출신이었던 그의 정치적 행보를 언급하고 소개하는 데 그쳤다. 이영애는 윤행임의 『碩齋日錄』 解題

-
- 1) 윤행임에 대한 연구는 김은숙(2009) ; 김윤조(1995) ; 김희태(2009) ; 이현진(2010) ; 노대환(2011) ; 남윤덕(2013a) ; 남윤덕(2013b) ; 남윤덕(2014a) ; 남윤덕(2014b) ; 남윤덕(2014c) ; 남윤덕(2016) ; 남윤덕(2018) ; 남윤덕(2020) ; 남윤덕(2021) ; 남윤덕(2021) ; 남윤덕(2024) ; 백승호(2016) ; 김채리(2017) ; 김정자(2021) ; 이원석(2020) ; 김재효(2024)의 논문이 있다. 역주본으로는 윤행임 저, 이봉래 역(1986) ; 윤행임 저·윤양호 역(1993) ; 윤행임 저·전송렬 역(2006) ; 윤행임 저·경기도박물관 학예팀(이명래·이해형) 역(2009)이 있으며, 최근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2021-2023)에서 펴낸 『국역 석재고·석재별고』가 발간된 상태이다.
 - 2) 윤행임은 남당 한원진의 ‘호론적 주자학풍’을 계승하며, 인물이 하늘에게서 부여받은 본연과 기질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며 오직 인간만이 이 모두를 온전히 갖고 태어난 존재로 보면서 주자 성리학의 인본주의와 조선 후기 사상사의 보수성을 대변하였다(남윤덕 2014c 참고).
 - 3) 윤행임 저·경기도박물관 학예팀(이명래·이해형) 역(2009, “이영애, 「尹行恮과 『碩齋日錄』」”, 549-559 참고)

에서 윤행임이 시파나 벽파 어느 한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조의 정책을 이어받아 펼치려는 정치적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해제의 특성상 그 대체를 개괄한 정도에 그친 한계가 있다. 이 현진은 유봉학⁴⁾과 박광용⁵⁾의 논리를 빌어 윤행임을 시파적 인물로 보았다. 그러나 윤행임을 시파라고 규정짓는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 노대환은 정조-순조대 초반 윤행임의 정치적 활동 전반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노대환은 윤행임이 사상적으로 호론의 논리를 고수하였고, 純祖代 벽파에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인지 그를 시파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복관 시 오히려 벽파에 동조했다는 시파의 비난을 받아 복관이 지연된 사건 등을 통해 특정 정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능력을 인정했던 정조에게만 충성심을 발휘한 近臣으로, 정조의 유지를 실천하는 것이 정치적 목표였다고 주장하였다. 노대환의 논지는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이 있으며, 본고에서도 일정부분 동의한다. 다만, 윤행임의 정치활동의 대체를 개괄한 성격이 강하다 보니 시·벽파를 오가고 서학에 관대했으며 남인과 북학 계열의 학자들과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치적 ‘복잡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한편, 김정자는 정조 사후 당시 벽파 중심의 정치세력과 정국의 동향을 살피는 과정에서 윤행임이 벽파에 의해 西學에 연루되어 ‘辛酉獄事’ 때 희생되는 과정을 밝혔다. 다만, 윤행임을 특정 당파에 소속시키지는 않았다. 이 밖에도 이종일⁶⁾, 김성윤⁷⁾, 권인호⁸⁾, 조

4) 유봉학은 윤행임을 단지 정조 측근의 신하로 보았을 뿐, 정치적 성향이 시파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다(유봉학 1995, 172, 각주 63).

5) 박광용은 윤행임을 정조 측근 노론으로 보았을 뿐 윤행임이 시파라고 규정하진 않았다(박광용 1998, 168-172).

6) 조성산이 참고한 이종일의 해당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서얼소통’을 찬성하는 시파 인물명단에 윤행임의 이름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이종일 1987, 74).

7) 김성윤은 자신의 논지에서 윤행임을 시파로 규정하고 있다(김성윤 1997, 196-372_부록).

8) 권인호는 윤행임의 당색을 노론 시파로 판단하였다(권인호 2000, 247-248).

성산(2007, 370-386), 조광⁹⁾등도 여러 논지를 내놓았다. 특히, 조성산은 윤행임이 처음에는 호론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을 주로 언급하였으나, 이종일의 논고를 참조하여 윤행임이 호론에서 낙론 시파로 전환한 것으로 재조정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기존 연구를 보았을 때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윤행임의 사상성과 당색에 대해 선명한 결론이 나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윤행임의 사상체계와 정치적 성향이 어떤 방식을 통해 접목되어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서학 및 특정 사건들을 중심으로 윤행임의 정치적 사유체계와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여 윤행임의 기저에 깔린 정치활동 전반의 특징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II. 윤행임의 經世的 입장

윤행임은 1782년 21세의 젊은 나이에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정치적 黨爭 속에서 僻派에 의해 유배되어 賜死되는 1801년까지 19년간의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걸어왔다. 윤행임의 학문과 정치적 성향은 가문대대로의 충절정신과 한원진으로 대표되는 호론적 사상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

① 당시 ‘心性同異’에 대한 분별함이 있었는데,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남당[한원진]께서는 내 先人[尹琰]이 及門한 스승이시고, 寒泉[李紱]께서는 내 선인의 冠禮를 도운 賓이셨다. 두 선생을 사모하여 우러르기를 태산북두와 같이 하셨으니 감히 함부로 의론할 수 없다. 다만

9) 조광은 ‘책 귀작 사건’ 당시 남인의 실질적 지도자로 윤행임을 표현하였다(조광 2010, 408).

‘선인’·‘先師’의 조리가 있는 논리를 지킬 뿐이다.”라고 하였다.¹⁰⁾

② ‘인물성동이’의 설을 봄에 『중용』·『맹자』와 주자의 여러 책을 살펴보면 환하게 알 수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寒水齋[권상하]와 남당의 논리가 지극히 高明하고 精微하여 더 붙일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 대개 소에게는 짐을 싣고, 말은 타는 것은 각각 그 부여받은 ‘성’에 따라 그러한 것이다.¹¹⁾

③ 경신(1800, 순조 즉위년) 4월 신축 일에 후학 윤행임은 향을 피우고 절하며, 우암 송선생·남당 한선생의 영전 앞에서 고합니다. …… 마음속으로 일찍이 우리 두 분 선생의 繼往開來의 功烈이 四海의 標範이 되고, 萬世의 법도로 전해짐을 크게 우러릅니다.¹²⁾

①은 아들 樅溪 尹定鉉(1793~1874)이 쓴 행장의 일부로 기존 연구 사에서는 이 글이 윤행임의 사상론을 결정짓는 데 논란이 되었다. ①에 대한 해명은 이 글의 끝 단락에 나타난 “다만 ‘선인’·‘선사’의 조리가 있는 논리를 지킬 뿐이다”는 내용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선인과 선사의 논리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사승관계에 놓여 있던 송시열—권상하—한원진(선사)—윤행(선인)으로 이어지는 호론의 논리를 윤행임이 지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②, ③의 글은 그 근거를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윤행임은 ‘호락논’에 대하여 중립이나 호론에서 낙론, 낙론에서 호론으로 바뀐 것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호론적 입장을 견

10) 尹行恮. 『碩齋稿』附錄. 尹定鉉. 「行狀」. “時有心性同異之辨, 嘗曰, ‘南塘吾先人及門之師也, 寒泉吾先人贊冠之賓也. 景仰兩先生, 如泰山北斗, 不敢妄議, 只守先人先師之緒論而已.’”

11) 尹行恮. 『碩齋稿』卷8. 書. 「答族叔(瑀)」. “垂示人物性同異之說, 考中庸孟子及朱子諸書, 可以瞭如. 如我寒泉水齋, 南塘二先生所論, 極高明而盡精微, 無容疊床矣. …… 蓋牛則服而馬則乘, 各循其所賦之性而然也.”

12) 尹行恮. 『碩齋稿』卷16. 祭文. 「告尤菴宋先生南塘韓先生文」. “維歲次庚申四月辛丑, 後學尹行恮爇香拜, 告于尤庵宋先生·南塘韓先生遺像之前日 …… 竊嘗景仰我二先生繼往開來之功之烈, 爲四海之標範, 垂萬世之章程.”

지했음을 알 수 있다(남윤덕 2014c, 214-216).

윤행임은 출사 이후 君師였던 정조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호론적 사상관과는 또 다른 정치 노정을 걷는다. 특히 정조의 西學 교회주의 정책과 그가 가까이했던 信西派 남인 세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서학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정조대를 거쳐 순조대로 접어든 윤행임은 순조 즉위년과 원년 초기에 정국 운영의 한 축을 맡아 도승지·이조판서·대제학 등의 요직을 역임하며 ‘선왕의 남긴 뜻’을 강조하며 정치적 국면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하였다.

1. ‘서얼소통’과 ‘내시노비혁파’

정조대의 ‘서얼소통’과 ‘내시노비혁파’에 대한 정책은 정조의 탕평 정치, 왕권강화, 右文政治, 민본정치의 복합적 구조 속에서 이해가능하다(배재홍 1996, 311). 정조의 寵臣이었던 윤행임은 순조 원년(1801)에 선왕 정조의 숙원정책였던 ‘서얼소통’과 ‘내시노비 혁파’를 직접 건의한다.

① 이조 판서 윤행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庶孽을 구별하여 대대로 枳塞하였는데, 이는 前古에 없었던 법입니다. …… 영조 임진년(1772 영조 48년)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큰 은택을 내리셔서 문신으로 兩司에 통하게 하고 무신으로 선전관에 注擬하게 하셨습니다. 선대왕께서는 등극하신 이후 융통성 없는 습속을 개탄하시고, 인재의 沈淪을 애석해 하신 나머지 즉위 원년인 정유년(1777 정조 원년)에 참작하여 절목을 만드신 다음 이를 『大典通編』에 실고, 재능이 탁월한 자는 구애 받지 말고 거두어 임용하도록 허락하셨으니, …… 비록 문학과 行誼가 드러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展布할 곳이 없었으므로, 무릇 서얼이 된 무리는 애초에 세상에 살아 있음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고 모두 自暴自棄 하는 탄식만 있으니, …… 이것이 어찌 위로 天和를 거스르는 한 단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初元의 정사를 맞이하여 인심을 수습하

고 인재를 장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영묘께서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신 법을 뒤쫓아 이어받아 선조의 성대한 뜻을 對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¹³⁾

② 王者가 백성에게 임하여 貴賤이 없고 內外가 없이 고루 균등하게 赤子로 여겨야 하는데, ‘奴’라고 하고 ‘婢’라고 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이 사랑하는 동포로 여기는 뜻이겠는가? 內奴婢 3만 6천 9백 74 구와 寺奴婢 2만 9천 93구를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허락하고, 인하여 승정원으로 하여금 奴婢案을 거두어 敦化門 밖에서 불태우게 하라.¹⁴⁾

①, ②는 실제 ‘서얼소통’문제와 ‘내시노비혁파’에 대하여 윤행임이 직접 건의한 사항과 순조의 명을 받아 적은 奴婢論의 내용이다. 윤행임은 ‘서얼소통’과 ‘내시노비혁파’에 대해서 선대왕 정조의 遺志였음을 강조, 그대로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보인다.

②에서 윤행임의 주장에 의해 순조는 선왕 정조가 추진해 왔던 ‘서얼소통’과 ‘내시노비제 혁파’를 실행해 옮긴다. 이에 논의 과정에서 주요 명분으로 작용하였던 ‘均是赤子’는 선왕 정조의 사상체계와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왕은 백성을 귀천·내외 없이 균등히 적자로 여겨야 한다’는 민본중심의 논리이며, 정조의 ‘萬川明月’ 王政論(조성산 2007, 404)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었다. 윤행임은 사상적으로 호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조의 정책에 적극 동의하며, ‘서얼소통’과 ‘내시노비 혁파’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조에 대한 충성심과 정책적 공감, 그리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복합적인 측면에서 해석

13) 『純祖實錄』卷2. “1年(1801辛酉) 1월 10일 3번째기사.”

14) 『純祖實錄』卷2. “1年(1801辛酉) 1월 28일 3번째기사.”; 『순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순조1년 1월 28일에 순조가 노비공의 혁파를 하교하고 윤행을 짓게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윤행임의 『碩齋日錄』[윤행임 저·경기도박물관 학예팀(이명래·이해형) 역(2009, 권6, 523-526)]의 기록에 따르면 1월 28에 奴婢貢의 혁파를 명하였고, 2월 3일 윤행임이 八道內 寺奴婢를 曉諭하는 論을 지어 받친 것으로 되어 있어 『실록』과는 시일 차이가 있다.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윤행임의 당색을 결정짓는 기존 논의에서의 문제점은 ‘서얼소통’과 ‘내시노비혁파’를 시파가 주로 찬성했고, 벽파가 주로 반대했다는 찬반을 기준으로 시파와 벽파로 구분지어 단정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윤행임을 이러한 이유로 시파로 규정짓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따른다. 첫째, 표면적으로 윤행임이 ‘서얼소통’과 ‘내시노비혁파’에 찬성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서얼소통’과 ‘내시노비혁파’에 시파인 金文淳·李命植·朴宗岳·鄭民始 등이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개혁에 찬성하였고, 벽파인 金중수·沈煥之·李書九 등은 반대의 입장을 편 것도 사실이다(김성운 1997, 196-240).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18세기 후반 정조대의 ‘서얼소통’과 ‘내시노비혁파’의 찬반은 당파별로 일방적으로 갈린 것이 아니라 노론(시·벽파)·소론·남인의 당파 내에서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찬반이 갈렸기 때문¹⁵⁾에 윤행임이 ‘서얼소통’과 ‘내시노비혁파’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색을 시파라고 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윤행임의 호론적 입장은 그의 말년인 1801년에도 변함이 없었고, ‘서얼소통’과 ‘내시노비혁파’를 건의하기 불과 2년 전인 1799년 정조와 나눈 「曾傳秋錄」의 기록¹⁶⁾에도 윤행임은 낙론에 동의하지 않고, 호론의 입장을 보인 점도 윤행임이 낙론 시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 따라서 윤행임이 벽파의 호론적 논리를 수용하면서 벽파와 대립하고, 호론이면서 시파와 낙론의 입장을 지지한 정조의 정책에 적극 동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윤행임이 대표적 충절 집안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는 丙子胡亂 당시 척화파 三學士로 잘 알려진 尹集(1606~1637)의 후손으로 집안의 ‘절의정신’과 ‘대명의리’

15) 김성운(1997, 196-240. 238-241. 351-387_부록. 「정조대 주요 정치참여자의 가문별 분포」) 참고; 박광용(1998, 156-158-168-172) 참고.

16) 正祖. 『弘齋全書』卷126. 「曾傳秋錄 閣臣尹行愆_序」

는 윤행임 자신의 정치적 사상체계를 형성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윤행임의 사상적 근원은 송시열에서부터 시작된다. 윤행임의 증조부인 尹泓(1655 ~ 1731)은 송시열의 문인이었다. 송시열은 그를 인정하여 자신의 손자인 宋漢源을 그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였다.¹⁷⁾ 이이와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송시열의 학풍은 주자를 중주로 삼고, 절의를 숭상하였다(조성산 2007, 140). 윤흥 또한 주자학과 절의를 중시하는 송시열의 학풍을 이어 받았다. 이러한 학풍은 윤행임의 가학을 형성하는 데 큰 구심점이 되었다. 윤행임은 집안 대대로 ‘대명익리’의 충절 정신을 지키는 데 무엇 보다 앞장섰다. 그는 “선왕[정조]의 뜻을 계승하고, 선왕의 도를 따르며 정치적 명령과 일처리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선왕이 재위할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게 한다.”¹⁸⁾라고 일관 한 바 있다(남윤덕 2018, 19-20). 그의 노력은 정조가 육성한 抄畝文臣이자, 閣臣으로 편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계승하려는 충성심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여러 곳에서 보인다.

① 정조는 일찍이 諸臣들에 논할 때 공에 이르러 “윤행임은 다만 나라가 있음을 알 뿐, 친구도 없이 고립된 사람이다.”고 하였다.¹⁹⁾

② 領府事 李秉模·영의정 沈煥之·좌의정 李時秀·우의정 徐龍輔가 百官을 거느리고 庭請하여 아뢰기를, “신 등이 윤행임에 대해 빨리 잡아다 국문하도록 명하여 명확하게 典刑을 바꾸도록 하라는 일로써 조금 전 前席에 올라 輿情을 힘써 陳奏하였으나, 성의가 부족하고 말이

17) 尹行恮. 『碩齋稿』卷17. 金石隨錄. 「曾王考靜齋府君墓誌」. “公諱泓, 字靜源, 靜齋其自號也. …… 往拜尤庵宋先生于溪上, 講春秋大義, 先生心許之, 以其孫漢源爲公之壻.”

18) 尹行恮. 『碩齋稿』附錄. 「行狀」. “先王之志是繼, 先王之道是遵, 政令事爲, 無大無小, 一無改於先王在宥之日.”

19) 尹行恮. 『碩齋稿』附錄. 金興根 「諡狀」. “正廟嘗論諸臣, 及公曰, ‘尹某只知道有國, 無朋孤立.’”

어눌하여 俞音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 오늘날 投書의 변고는 곧 하늘과 땅 끝까지와 古수를 뺀쳐 보아도 있지 않았던 바, 임금의 원수이고 나라의 역적입니다. 任時發과 尹可基는 손으로 凶書를 쓰고 입으로 凶言을 나타낸 전후의 情節이 낭자하게 다 드러났고 명백하게 실정을 자복하였는데, 그 흥서와 흥언은 대단히 보잘것없는 두 녀석이 홀로 판별하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바가 아니라면, 흉악한 심보가 짝게 된 까닭과 독을 쓰는 것이 방자하게 된 원인은 곧 윤행임 이 사람이었습니다.²⁰⁾

③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龍仁의 李召兪가 上言하기를, ‘저의 남편으로 罪死한 臣 尹行恂은 경신년에 참혹하고 애통한 變을 당하였습니다. 임금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나라를 내 집처럼 걱정하는 苦心과 血誠이 다른 사람들의 배나 되었으나, 그때는 沈煥之·金魯忠 무리가 위세를 떨쳐 발호하였고 時象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도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망녕되이 裁抑하려고 하다가, 드디어 그들 무리의 마음을 거슬렀던 탓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罪案을 꾸며 만들었던 것입니다. …… 아! 忠貞公 臣 尹集의 斥和한 大義는 百世토록 赦宥해도 되는 忠節인데, 그의 後裔가 되었으니 나라를 위하여 한번 죽는 것은 일찍이 스스로 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은 邪黨을 扶護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凶賊과 서로 내통했다고 하기도 하여 참혹한 禍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天道가 循環하여 權凶들이 모두 그 죄에 굴복하고 幽冤이 차례로 伸雪되었습니다만, 惡名을 신설할 날이 없었고 心事를 暴白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瑕疵를 씻어 주는 은택을 널리 베푸는 때를 당하여, 특별히 저의 남편을 신설시키라는 명을 내려 주시기를 엿드려 빕니다.’라고 하였습니다.”²¹⁾

④ 승지 【洪義浩·朴宗薰·金相休·權丕應·朴宗臣이다.】 등이 아뢰기를, “아! 尹行恂의 천만 가지 죄악에 대해서는 대나무를 다 베어내어도 죄다 기록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 沈煥之·沈觀之의 제멋대로 활개 치는 형세를 도와서 몰래 機括을 설치하여 狙擊하고, 일의 단서를

20) 『純祖實錄』卷3. 「1年(1801 辛酉) 9월 6일 3번째기사」.

21) 『純祖實錄』卷12. 「9年(1809 己巳) 9월 21일 1번째기사」.

만들어 놓고서 흔들어 떨어뜨리게 한 것이 윤행임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까? …… 따라서 이제 와서 伸復시키는 恩典은 애당초 擬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公議를 돌보지 않고 제방을 엄히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단지 그의 집에서 호소하는 내용을 적어서 올린 한 장의 종이에만 의거하여 갑자기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죄벌이 되는 요망한 역적을 赦宥시킴에 있어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으니, 이것이 무슨 舉措입니까?22)

①은 정조가 윤행임의 당색을 평가한 부분이다. “윤행임은 다만 나라가 있음을 알 뿐, 친구도 없이 고립된 사람이다.”라고 한 점은 윤행임이 어떠한 당파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정조에게 충성한 인물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②는 ‘尹可基·任時發 掛書 사건’²³⁾을 계기로 노론 벽파인 李秉模·沈煥之와 소론인 李時秀·徐龍輔가 윤행임을 탄핵한 내용이며, ③은 1809년 윤행임의 부인 李召史가 노론 벽파인 심환지·金魯忠에 의해 억울하게 죄를 받은 남편의 신원회복을 요청하는 상소다. ②, ③을 통해서도 윤행임이 비록 벽파의 호론 사상을 수용했지만 벽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④에서는 오히려 노론 시파들로부터 윤행임이 노론 벽파인 심환지·沈觀之를 도왔다고 하여 복관을 거부당하는 점을 보더라도 윤행임은 시파에도 속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서얼소통’과 ‘내시노비혁파’ 그리고 기타 윤행임의 당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 보았다. 윤행임은 자신의 스승이자 군주였던 정조를 위해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인물이었다. 이것은 윤행임의 정치적 목표와 의도가 모두 정조에게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③에서처럼 바로 윤행임 자신이 목숨보다 중시했던 집안 대

22) 『純祖實錄』卷12. 「9年(1809 己巳) 9월 22일 4번째기사」.

23) 윤가가·임시발 패서 사건은 김정자(2021, 168-174)를 참고하기 바란다.

대로의 忠·逆을 구분하는 충절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 ‘西學’에 대한 입장

정조 연간 18세기 말엽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천주교 신앙 운동은 성리학 중심의 조선에 대한 사상적 도전이었다(조광 2006, 200). 특히, 천주교의 수용은 중국에서 들어온 漢譯西學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서양과학과 천주교 교리에 대한 서적들은 새로운 사상적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던 당시 신진 지식인들은 물론 기존의 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전종익 2009, 117). 이러한 주변부 위기의식 속에서도 조선 조정은 여전히 주자학 중심의 유교적 전통 사회의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한편 천주교를 탄압하고 嚴禁하기에 이른다.

筵臣에게 하교하기를, “요사이 서양의 邪學이 점차 성해지는 것에 대해 공격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또한 근본을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니, …… 진실로 正學을 제대로 밝혀서 사람들이 모두 ‘이것은 매우 좋아할 만한 것이고 저것은 사모하여 흉내 낼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면, 비록 사학으로 돌아가게 하더라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도는 여러 사대부들이 각자 자기 자제에게 주의를 줘서 경전을 많이 읽어 그 속에 침잠하고 바깥으로 치달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른바 사학이라는 것이 공격하거나 배척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학 신 鄭民始가 정사년(1797)에 기록한 것이다.²⁴⁾

24) 正祖. 『弘齋全書』卷164. 日得錄4. 「文學4」. “教筵臣曰, ‘近來以西洋邪學之漸熾, 多有攻斥之人, 而此亦不識治本之道也, …… 苟使正學修明, 使人皆知「此甚可樂而彼不足慕效」, 則雖使之歸邪學, 決不爲也. 在今之道, 莫如諸士大夫各飭其子弟, 多讀經傳, 沉潛其中, 勿使外驚, 則所謂邪學, 不待攻斥而自期止熄也.’ 提學臣鄭民始丁巳錄.”

정조는 기본적으로 근래 조선사회 전체에 유행처럼 번지며 전통 유교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서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정조는 서학이 성행하는 이유를 안에서 찾는다. 즉, 正學인 주자학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데서 서학이 만연하는 풍조가 조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조는 서학에 대해 과격 논자가 아닌 교화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른바 사학이라는 것이 공격하거나 배척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조는 당시 서학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했던 노론 벽파와는 그 대응 방식이 달랐다. 기실 정치적으로 서학에 대한 결단은 정조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정조의 측근 丁若鏞 등의 신서파와 남인이 서학과 연루되어 있고, 그러한 남인을 축출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노론 벽파와의 사이에서 일정한 탕평이 필요했던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다. 정조의 이러한 대응 방식은 훗날 윤행임이 서학에 대해 교화주의적 입장을 갖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① 상이 이르기를, “李景溟의 소에서 西學의 폐단을 극력 말하였는데, 폐단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하니, 좌의정 李性源이 아뢰기를, “신은 그 학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종전에 처분한 뒤에도 여전히 그칠 줄을 모른다면 다시 엄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 우리 도[吾道]와 正學을 크게 천명한다면 이런 邪說은 일어났다가도 저절로 없어질 것으로 본다.” 제공이 아뢰기를, “가운데 좋은 것도 간혹 있으니, 이를테면 하느님[上帝]이 굽어 살피시어 사람들의 죄수에 오르내리신다는 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 그 말에 있어서는 비록 불교를 배척한다고 하지만, 대개 불교의 일면의 소견을 흠쳐다가 자기들의 교리로 삼았으니 이는 불교 중의 別派입니다.”하였다. 성원이 아뢰기를, “어리석은 남녀들이 그것을 神明처럼 받드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라고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그 책에 ‘하느님이 내려와서 예수가 된 것이 중국에 堯·舜이 있는 것과 같아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잘 걷게 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허무 맹랑한 말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날아서 들어간다는 설에 이르러서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들의 설이 을사 년간에 크게 성행하였는데, 金華 鑣이 형조 판서로 있을 때에 대략 수색해 다스렸으니, 이 일은 有司의 신하에게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약 큰 사건으로 만들어 조정으로 밀어 올린다면 어찌 방만하게 되어버리지 않겠는가. 대저 左道를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키는 것이 어찌 서학뿐이겠는가. 중국의 경우 陸·王學, 老·佛道의 流가 있었지만 언제 금령을 설치한 적이 있었던가. 그 근본을 따져보면 오로지 유생들이 글을 읽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일일 뿐이다.”하였다.²⁵⁾

② 삼가 생각건대 우리 皇考[정조]께서는 文教를 널리 펴서 그릇되고 간사한 학설을 막고, 미혹된 사람들을 이끌고 깨우쳐서 우리의 대도에 함께 나아가서 떳떳한 윤리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속은 점점 그릇되어 고칠 줄을 몰라서 성인의 교훈을 비난하고 천주교의 妖術을 법으로 삼았습니다. 어리석게 그 부모와 자제를 버려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자제에게는 자애롭지도 않고는 헛소리를 퍼뜨려 현혹하면서 天理를 무시하고 인륜을 말살하였습니다. 衣冠을 갖춘 선비들이 때 지어 禽獸가 되어 윗사람을 범하고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니 신과 사람이 함께 노하였습니다. 마침내 대비의 傳敎를 받들어 공경히 하늘의 징토를 행하여 악한 무리의 괴수인 丁若鏞·李承薰·洪樂敏·洪敎萬·崔必恭·崔昌顯은 모두 사형에 처하여 그 시체를 길거리에 내다 버리고, 李家煥과 權哲身은 杖殺하였으며, 丁若鏞 이하는 먼 곳으로 유배 보내니, 민심이 안정되고 나라의 命이 새로워졌습니다. 훈령이 오르내리심이 매우 가까우니 감히 경건하게 고합니다.²⁶⁾

①은 정언 李景瀍이 西學의 폐단이 먼 시골의 무지한 백성들에까지

25) 『正祖實錄』卷26. 「12년(1788 戊申) 8월 3일 1번째기사」.

26) 尹行恮, 『碩齋稿』卷13. 內制隨錄. 「孝元殿晝茶禮 兼告討逆時親祭文」. “恭惟我皇考, 誕敷文教, 庸距邪說, 率籲羣惑, 偕底我大道, 俾毋蹈匪彝, 維俗漸註, 罔有知悛, 惟聖訓是訾, 惟妖術是程, 昏棄厥父母子弟, 弗迪弗字. 迺講張爲幻, 慢天滅倫, 衣冠之族, 萃焉禽獸, 犯上不軌, 神人胥怒. 遂奉慈旨, 恭行天討, 兇魁鍾·薰·敏·教·恭·顯并棄市, 家哲杖死, 若鏞以下流遠方, 民志克靖, 邦命維新. 陟降孔邇, 敢伸虔告.”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상소한 데에 대하여 정조와 소론의 영수였던 李性源·근기 남인의 영수였던 蔡濟恭이 그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본 논의에서의 특이점은 서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던 노론 벽파는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서학에 대한 정조의 정치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즉 정조의 서학 정책에는 교화주의적인 측면이 내재해 있다. 서학에 대한 정조의 정책에 이성원과 채제공도 동의한다. 특히, 남인인 채제공 같은 경우 서학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언급하고 있어 남인이 서학과 관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당시 서학에 대한 정치적 정황은 강경파인 벽파와 교화주의파인 남인, 소론, 시파와 군왕 정조로 나뉘어 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럼 윤행임은 어떠한가? ②는 윤행임이 1801년에 지은 「孝元殿晝茶禮 兼告討逆時親祭文」이다. 글의 제목에 보이는 孝元殿은 정조의 殿號를 가리키며, 晝茶禮는 정조의 국장 뒤 삼년상 안에 魂殿이나 陵所에서 낮에 차를 올려 지내는 제례를 말한다. 즉, 순조가 선왕 정조를 위해 효원전에서 낮에 제례를 지내는 것을 겸하여 신유년 토역[辛酉邪獄]때 일을 고하는 親祭文을 윤행임에게 짓게 한 것이다. 사실 이 친제문은 정순왕후와 벽파의 명에 의해 짓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②에서는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가 일으킨 ‘신유사옥’으로 인해 표면적으로 邪學인 천주교를 박해한다는 명분과 정당성을 천명하는 자리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대 세력인 (신서파)남인을 정계에서 축출하고자 했던 정쟁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②에서도 확인되듯이 실제 ‘신유사옥’에서 신서파 남인의 핵심인물이었던 丁若鍾·李承薰·洪樂敏·洪教萬·崔必恭은 참형을 당하였고, 李家煥·權哲身은 장형을 당해 죽었으며, 丁若鏞과 그 밖에 서학 관련자들은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등 ‘신유사옥’을 가장한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에 의한 정쟁의 사실을 기록하는 명을 받은 윤행임의 입장에서선 난감

했을 것이다. 평소 윤행임은 정조와 가까웠던 신서파 남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서학에 대하여 비교적 교회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②에서 윤행임은 오히려 서학에 대하여 벽파와 같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가 일으킨 ‘신유사옥’의 명분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는 ②에 보이는 윤행임의 글이 ‘신유사옥’ 이후 쓴 나라의 공식적인 친제문이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②에 보이는 입장은 윤행임의 정치활동 편에서 추가 후술하겠지만, ‘신유사옥’이라는 사건 자체는 실질적으로 정순왕후와 벽파의 집권야욕에 의해 결행되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순조가 처결한 사안이다. 이 일을 전제로 윤행임이 순조가 지내는 親祭의 공식석상에서 순조와 정순왕후 그리고 노론 벽파를 비판하는 친제문을 지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석재집』에 ②와 함께 수록된 「孝元殿晝茶禮兼告嗣妻湛妻賜死時致祭文」이 刀削된 이유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말 그대로 이 글은 『석재고』 권13에 目錄만 존재할 뿐, 本文은 도삭되어 전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유추해 볼 때 이 글은 ②의 글과는 달리 ‘신유사옥’과 관련하여 정조의 이복동생이자 천주교 신자로서 殉敎한 恩彦君 李禰의 부인 宋氏와 은언군의 아들인 常溪君 李湛의 처 申氏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석재고』 간행 시기로 생각되는 현종-철종 원년인 1835년~1850년 당시에, ‘신유사옥’의 사건 정황과 맞물려 국가적으로 민감했던 사안이었기에 간행 후 고의로 도삭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자료들을 보충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겠다.

Ⅲ. 정치 사건의 구체적 양상

正祖~純祖 초반은 격동의 시대였다. 조선의 전통적 질서가 동요하고 주자학이 지도이념으로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西學[天主教] 등의 외래 사상과 문화의 영향으로 전통 사상과 문화 역시 급변하고 있었다. 당시 격동의 주 무대는 서울과 인근 경기지역으로, 이곳을 생활 근거지로 하였던 京華世族 지식인들은 조선사회의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다(유봉화 2005, 1). 이들이 제시한 정론과 이해득실에 따라, 조선후기 사회는 정치적 파란이 예고되었다.

본 장에서는 당시 정조의 知遇를 받고 최측근에서 정치적 파트너로 활동했던 윤행임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의 사환기 때 특정 사건들(‘柳星漢·尹九宗 사건’·‘책 꺾자 사건’과 ‘辛酉邪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柳星漢·尹九宗’ 사건

1792년 정조 16년 4월 노론 벽파의 영수였던 金鍾秀系 인물들이 주동한 ‘柳星漢·尹九宗 사건’이 연이어 발발한다. 이들 두 사람은 서로 이웃하며 지내는 친분 있는 사이로, 이 사건은 후일 노론 시파와 소론, 남인들이 노론 벽파를 겨냥하여 김종수를 그 배후로 지목하고 공격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① 내가 즉위한 뒤로는 사실 경연에 자주 나가지 못하였다. 혹 朝講도 하고 혹 晝講도 하긴 하였으나, 이 역시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대왕께서 56세 이후로는 경연에 자주 나가시지 않다가 66세에 이르러 다시 경연에 나가시되 비바람과 추위 더위를 가리지 않고 매일 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차

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정도 반드시 짐작할 것이다. 그때의 日記가 아직도 春坊에 있는데, 그 뒤부터는 ‘하루 세 번 강한다.[日三講]’는 말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정신이 날아가 스스로 안정을 하지 못한다. 내가 사냥개나 말, 음악이나 여색을 즐기지 않으니, 어찌 문자에 뜻이 없겠는가마는 근래에 이르러서는 국사가 복잡하여 자주 나가지 못한다.²⁷⁾

② 정언 柳星漢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듣건대 근일 전하께서 경연에 드물게 나아가신다 하는데, …… 이는 혹 별다른 은미한 뜻이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까? …… 목이 메이는 것으로 인하여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전하의 밝은 지혜로서 어찌 그 불가함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이미 지난 일인데 무슨 상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 신이 또 삼가 향간에 전하는 말을 듣건대 ‘광대[倡優]가 大駕 앞에 외람되게 접근하고 女樂이 난잡하게 禁苑에 들어간다.’ 하니, 이는 비록 사소한 절목이지만 또한 성상의 큰 덕에 누가 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이런 것들도 또한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 빨리 經筵을 베풀어 앞으로의 성과를 구하고 더욱 德에 증진하기를 힘쓰소서.”²⁸⁾

③ 유성한의 上疏 가운데 위 조항은 말이 막중한 자리를 범한 것이니 말 밖에 다른 뜻이 있고 없음을 논할 필요도 없고, 아래 조항은 단지 궁궐의 지형을 몰라 대궐 가까운 곳으로 잘못 알고서 그런 것이거니와 그 또한 향간에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니, 향간에 전하는 말이란 터무니 없이 전파되는 말이다. 전하는 말을 익히 듣고 말한 것이니 이것으로 죄 줄 필요는 없다. 이제 신하들이 治罪하기를 청하면서 아래 조항을 가지고 중죄로 돌리니 이는 나의 본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갓옷을 입으면 비록 따뜻하나 여우와 담비가 서로 슬피한다.[衣裳雖得暖 狐貉正相哀]”는 것은 東坡의 시이다. 이와 같다면 사냥하여 큰 돼지를 잡아 바치는 예는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이니, 仁人君子의 마음 씀씀이가 바로 동파의 시에서 말한 것과 합치된다. 이와 같이 마음을 쓴다면 곧 인인군자

27) 『正祖實錄』卷33. 「15년(1791 辛亥) 8월 8일 1번째기사」.

28) 『正祖實錄』卷34. 「16년(1792 壬子) 4월 18일 3번째기사」.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여 반드시 모두 좋은 벼슬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풀이라고 하여 반드시 모두 좋은 땅에서 나는 것은 아니며, 좋은 말[馬]이라고 하여 반드시 모두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言]이라고 하여 반드시 모두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음이 좋은 뒤에 사람이 좋고 사람이 좋은 뒤에 말[言]이 좋은 것이다. 원임 직각 신 윤행임이 임자년(1792)에 기록하였다.²⁹⁾

①, ②, ③은 각각 ‘柳星漢 사건’의 빌미가 되는 정조의 언행과 유성한 상소문 그리고 이 사건을 덮으려는 정조의 의도가 담겨 있다. ‘유성한 사건’은 “하루 세 번 강한다.[日三講]’는 말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정신이 날아가 스스로 안정을 하지 못한다.”는 정조의 말에 유성한이 “목이 메이는 것으로 인하여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전하의 밝은 지혜로서 어찌 그 불가함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이미 지난 일인데 무슨 상심할 것이 있겠습니까.”라는 말로 대응하며, 經筵을 열어 학문을 닦을 것을 청하는 데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이는 정조가 지난날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이 당시 경연을 통해 이뤄졌다는 심적 압박감에 경연을 자주 열지 않은 것으로 연결되면서 대신들로부터 탄핵을 받는 1차 단서가 되었으며, 나아가 ‘광대가 大駕 앞에 접근하고 女樂이 禁苑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통해 정조의 사치를 오해하여 이를 경계한 유성한이 예전에 사도세자를 무함하던 방식으로 정조를 무함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 이후 노론 벽파가 공격받는 2차 단서가 되었다.³⁰⁾ 그러나 윤행임이 기록한 ③에서처럼 정조는 이 일이 자칫 당쟁

29) 正祖. 『弘齋全書』卷176. 日得錄16. 「訓語3」. “柳星漢疏, 上款語犯莫重, 言外之情無情不須論, 下款特不識禁中地形, 誤認爲近闕之地而然, 渠亦以巷傳爲言, 傳之巷者, 卽講張之餘習. 聞其傳而言之者, 不必以此爲罪. 諸臣請討, 或以下款歸重, 不知予本意也. ‘衣裘雖得暖, 狐貉正相哀.’, 東坡詩也. 若如此則田禽獻豸之禮, 廢亦無妨, 而仁人君子之用心, 政合坡詩所道. 心如是用, 便可做仁人君子. 好人未必皆爲好官, 好草未必皆生好地, 好馬未必皆逢好男, 好言未必皆出好心. 然心好而後人好, 人好而後言好. 原任直閣臣尹行恉壬子錄.”

으로 번져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는 자신이 원했던 蕩平 정국과도 동떨어진 소모전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사건만을 놓고 보았을 때 윤행임의 생각과 행동 또한 정조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당시 정조의 말을 기록하고 간언하는 원임 직각의 자리에 있었지만, 윤행임은 정조의 이 말에 대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① 부수찬 崔顯重이 상소하여 유성한의 죄를 성토했을 것을 청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尹九宗은 본래 유성한 무리의 파당으로 온 나라가 같은 목소리로 성토했을 때를 당하여 자신이 현임 대간이면서도 성토했 뜻이 없어 갑자기 미친병이라 핑계 대고 오로지 피할 길만을 일삼았습니다. …… 그 음흉한 의도와 유성한을 비호한 자취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빨리 먼 변방으로 물리치는 벌을 내리소서.”하였다. …… 政院이 아뢰기를 “부수찬 최현중에게 물어보니,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일찍이 東陵의 別檢이 되었을 때, 매번 惠陵을 지나갈 적마다 말에서 내리지 않자, 陵卒이 규례를 근거하여 고하니 그가 문득 말하기를, 「이 능에서도 또한 말에서 내려야 하는가?」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신이 일찍이 통분해 하였으니, 이것 또한 미친병이 도져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신이 듣고 아는 바로는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³¹⁾

30) ‘유성한 사건’을 좀 더 살펴보면, 지난날 영조가 思悼世子的 代理聽政을 시작한 뒤 10년간 경연에 나오지 않다가 66세 때인 1758년(영조 34)에 한 달에 3차례씩 강연을 열었는데, 이 경연에서 주로 사도세자에 대한 誣告가 이루어졌고 결국 사도세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된 사안과 정조가 이러한 이유를 핑계로 경연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유성한 상소가 서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조정 신하들로부터 수많은 탄핵을 받는 요인이 되었다(김성운(1997, 303). 아울러 상소 말미에 항간에 떠도는 “광대[倡優]가 大駕 앞에 외람되게 접근하고 女樂이 난잡하게 禁苑에 들어간다.”는 말에 대해서는 新恩[과거 급제자]이 臺駕를 공경히 맞이할 때 신을 따르던 광대들도 함께 따랐던 것과 將臣들이 燃燈籠 저녁에 장용영 뒤의 放馬苑[궁궐 밖 동산]에서 잔치를 열고 즐겼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유성한이 예전에 사도세자를 무함하던 방식으로 정조를 무함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 재차 탄핵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正祖. 『日省錄』. 「15年 8月 8日. 16年 4月 18日·4月 30日·閏 4月 4日」에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31) 『正祖實錄』卷34. 「16년(1792 壬子) 윤 4월 10일 4번째기사. “○副修撰崔顯重上疏, 請討柳星漢之罪, 仍言: ‘尹九宗, 本以星漢輩徒黨, 當此舉國同聲之日, 身爲時

② 판의금부사 홍익 등이 아뢰기를, “조금 전에 재삼 심문할 때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라고 한 3자를 가지고 그 정상에 대해 반복해서 힐문하니, 4자의 부도한 흥언을 제멋대로 내뱉고 ‘어제 공초 중에서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던 것은 제가 懿陵에 대해서는 신하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 내가 이르기를, “선왕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나의 처지에서는 몸소 나아가서 재삼 심문하고 즉시 처형하여 저자에 놓아두는 법을 시행해야 할 일이다.” …… 鄭昌順은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다시 재삼 심문하여 소굴과 근저를 파헤치고 나서 법을 적용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 역적과 유성한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니, 속히 먼저 이 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 좌의정 채제공은 아뢰기를, “유성한과 윤구종 두 역적이 지극히 존경스러운 분을 범하는 말을 한 점에서는 동일하니, …… 다시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갑자기 처형한다면 그의 도당들이 …… 하나의 구실을 삼아 刑政의 누가 되는 일로 귀결시킬 것이 우려됩니다.”라고 하였다.³²⁾

③ (1792년 閏 4월 14일)상께서 備邊司에 남시어 친국 입시에 나아가 참여하였다. 죄인 尹九宗을 親鞫함이다.[윤행임 著·경기도박물관 학예팀(이명래·이해형) 譯(2009, 권4, 321)]

①, ②는 ‘尹九宗 사건’에 대한 기록과 윤구종에 대한 탄핵 내용이며, ③에서는 정조가 죄인 윤구종을 친국한 사실이 윤행임의 『석재일록』에 기록되어 있다. ①에서 1792년(정조16) 윤 4월 10일에 부수찬 崔顯重이 柳星漢을 탄핵할 때 거짓으로 미친 척하며 유성한을 옹호했던 윤구종을 변방으로 내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죄목은 윤구종

臺, 無意聲討, 忽稱狂病, 專事規避. …… 其用意之陰秘, 蹤跡之營護, 有難容貸. 請亟施屏裔之典.’ …… 政院啓言: ‘問于副修撰崔顯重則以爲: 「此人曾爲東陵別檢之時, 每過惠陵, 未嘗下馬, 陵卒據例以告, 則輒曰: 「此陵亦下馬乎?」 其言無人不能, 臣嘗痛之. 此亦出於狂病而然耶? 臣之所聞而所知者, 不過如斯」 云矣.’

32) 正祖. 『日省錄』. 「16년(1792 壬子) 윤 4월 14일」.

이 崇陵의 別檢으로 있을 때 景宗妃 端懿王后의 능인 惠陵을 지날 때마다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②에서 윤구종을 鞠問한 결과 그에게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과 懿陵[경종의 陵]의 신하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자백을 받아내면서, 노론 벽파를 향한 공격이 일어난다.³³⁾ 이후 정조 16년 5월 2일과 5월 7일, 2차례에 걸쳐 嶺南의 儒生 1만 57명이 연명하여 사도세자에 대한 모함을 辨析하고 의리를 밝히기를 요구하는 嶺南萬人疏가 제기되고, ‘壬午義理’가 현안으로 등장하기에 이른다. 이 영남만인소에 대해 노론 시파 계열의 李秉模, 徐有隣, 邊得讓 등이 동조의 뜻을 표명하면서, ‘유성한·윤구종 사건’의 화살이 ‘임오의리’와 그 배우로 지목된 김중수에 게로 향한다(김성운 1997, 303). ‘유성한·윤구종 사건’의 본질은, 경종의 정통성을 부정하여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나아가 사도세자의 죽음이 정당하다는 노론 벽파의 입장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이 사건은 노론 시파, 소론, 남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유성한·윤구종 사건’은 당파 싸움으로 크게 번졌다. 당시 노론 벽파의 영수 김중수를 사건의 수괴로 지적하고, 시파·소론·남인이 연합하여 대대적으로 請罪하였다. 윤행임은 ‘유성한 사건’이 경종의 정통성을 부정했던 ‘윤구종 사건’으로까지 확대되자, 유성한·윤구종 및 김중수 탄핵에 가담하게 된다.³⁴⁾

33) 正祖. 『日省錄』. 「正祖 16年 閏 4月 10日·13日·14日」에 관련 내용이 있음.

34) 『承政院日記』 정조 16년 윤 4월 14일 기사. “壬子閏四月十四日酉時, 上御熙政堂. 時·原任大臣·閣臣·金吾堂上請對, 三司諸臣同爲入侍時, 都承旨徐邁修, 左承旨申耆, 右承旨李百亨, 左副承旨李喆模, 右副承旨尹弼秉, 同副承旨金孝建, 假注書宋知濂·洪樂游, 記事官李重蓮·林景鎮, 領敦寧洪樂性, 領府事李福源, 左議政蔡濟恭, 右議政朴宗岳, 原任提學吳載純, 原任直提學李秉模·朴祐源, 直提學金憲, 原任直閣徐鼎修·鄭東浚·徐龍輔·尹行任, 檢校直閣李晚秀·徐榮輔, 直閣南公轍, 待教徐有槩, 判義禁洪槩, 知義禁金尙集·具庠, 同義禁趙心泰, 大司憲李洪載, 大司諫尹行元, 執義李普天, 獻納朴奎淳, 持平洪克浩, 校理沈興永·尹光普, 副校理李尚度·宋祥濂, 副修撰崔顯重, 藥房提調鄭昌順, 以次進伏訖.”; 1794년 윤행임의 이름 자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 윤행임의 初名은 원래 行任이었는데, 당시 純祖가 5세였던 元子 시절 ‘任’字를 쓰면서 아래에 ‘心’字를 덧붙이자 곁에 있던 정조가 그대로 쓰도록 한데서 ‘行愆’으로 개명하였다.[尹行愆. 『碩齋稿』附錄. 尹定鉉. 「行狀」. 「府君諱

① 상소의 대략에, “아, 저 역적 윤구종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차마 흉악하기 짝이 없는 大逆不道한 말을 내뱉어 이렇게까지 인륜을 무시하고 기강을 범한 것입니까. …… 이 역적이 나오게 된 근본을 섬멸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 이것은 토죄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 저 윤구종이 천지에 사무치는 흉악한 역적이기는 하지만 그는 일개 하찮고 비천한 사람에 불과하니, 이치로 미루어 보면 숨어 있는 그림자에 비해 겉으로 드러난 도깨비의 형체일 뿐이고, 유성한 이야말로 이른바 진짜 그림자인 것입니다. …… 金尙魯, 洪啓禧의 심보와 남몰래 연결되고 洪麟漢, 鄭厚謙의 선동을 공개적으로 자행하였으니, 임금을 무자비하게 욕한 것은 군사를 일으킨 것보다 심하였고 거짓 말을 꾸며 대려고 계획한 것은 들판에 번지는 불보다 다급하였습니다. …… 유성한에 대해 한창 엄히 징토하고 있는데 저 윤구종이 갑자기 거짓으로 미친 척하였으니, 둘이 한마음으로 관통되어 있으며 당여를 위해서는 죽는 것도 감수한 정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지적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의 눈을 가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 흉악한 말을 한 자는 유성한과 윤구종이지만 반드시 이 일을 주장한 당사자가 있을 것이며, 앞장서서 범한 자는 유성한과 윤구종이지만 반드시 이 일을 준비한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 그림자를 따라가서 형체를 찾아내고 가지를 통해서 뿌리까지 찾아내어 흉악한 역적의 근본을 통렬히 뽑아내고 禍亂의 실마리를 영구히 막아버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들이 윤구종에게 처자식까지 처형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유성한을 엄히 국문해야 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한 이유입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이같이 할 일이 아니다. 원래의 상소는 돌려주어라.”라고 하였다.³⁵⁾

② (1792년 閏 4월 21일)조정의 신하들이 劾辭하여 懲討하는 聯疏에 나아가 참여하였다.³⁶⁾ 그때 九宗을 請討하였다. 상께서 답하여 말하기

行恁, 字聖甫, 初諱行任. 純祖五歲, 手書姓名, 任字加心, 正廟命改之如元子宮所書.”]

35) 正祖. 『日省錄』. 「16년(1792 壬子) 윤 4월 21일」.

36) 『承政院日記』 정조 16년 윤 4월 21일 기사. “行判敦寧府事李命植, 行司直吳載純·洪億, 判敦寧府事李灃, 行司直李敏輔, 行副司直尹著東·李埤·沈豐之, 兵曹判書李

를 “이 일은 이같이 할 일이 아니다.”하고 原疏를 도로 돌려 주었다[還給][윤행임 저·경기도박물관 학예팀(이명래·이해형) 역(2009, 권4, 321)].

①의 연명 상소에서는 시파·소론·남인이 연합하여 ‘유성한·윤구중’의 배후를 찾아 발본색원하여 엄벌할 것을 주청하고 있다. 그리고 ②의 『석재일록』에도 윤행임이 탄핵 상소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윤행임은 ‘유성한 사건’에서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유성한이 윤구중과 함께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유성한·윤구중’을 함께 처벌하는 연명 상소에 동참하였다. 그 이유는 윤구중이 경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곧 사도세자를 부정하고 이는 나아가 그의 아들인 정조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윤행임으로서도 정조의 근신으로 주군의 정통성을 지켜내기 위해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경종 독살설’을 사도세자가 믿게 되면서 영조와 노론의 정치적 희생양이 된 사실로 연결된다. 이러한 이유로 윤행임은 대신들의 연명 탄핵 상소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유성한·윤구중 사건’을 통해 볼 때 윤행임의 정치 성향은 그 초점이 모두 정조의 탕평책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2. ‘책 꺾깍’ 사건과 ‘辛酉邪獄’

정조가 1800년 6월 28일 승하한 이후 정순왕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 척족과 노론 벽파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1801년에 일

秉模, 右參贊宋載經, 知中樞府事金頤柱, 行副司直鄭存中·趙煥·李復永·李柱國, 及第沈頤之, 吏曹參判金憲, 戶曹參判金持默, 禮曹參判申光履, 漢城府左尹徐有大, 右尹黃昇源, 兵曹參判李鎮復, 行副司直魚錫定, 前參判洪秉繼, 前承旨李亨元, 同敦寧府事李鎮翼, 行訓鍊院正李漢豐, 行副護軍申大顯·任崔·姜五成·邊慶遇·吳載熙·李應赫·李源, 及第李祖承, 吏曹參議徐邁修, 禮曹參議申者, 工曹參議姜垣, 行副司直李師濂·吳載紹·金光岳·李命彬·尹弘烈, 前承旨金履翼, 大司成金方行, 行副司直李翼晉·洪義榮·尹行任 …… 及第徐有聞·安策·魚用謙等疏曰, ‘伏以臣, 噫嘻, 痛矣. 義理晦塞, 倫彝斁絕, 窮天地亘古今所未有所未聞千妖萬惡之九宗者出矣.’”

어난 ‘책 귀작 사건’을 기점으로 ‘辛酉邪獄’을 일으켜 정조 의리탕평의 축이었던 노론 시파와 소론 그리고 남인 세력을 궁지에 몰아넣는다(정 옥자 외 1999, 107).

‘책 귀작사건’과 ‘辛酉邪獄’은 ‘尹可基·任時發 掛書 사건’과 함께 윤행임의 정치생명에 있어서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두 사건 모두 서학 즉 천주교와 관련이 깊었으며, 윤행임은 信西派 남인 세력과 연루되었다. 윤행임은 평소 정조가 신임했던 채제공을 중심으로 한 남인세력과 비교적 가깝게 지냈다. 그러나 남인세력 가운데 특히 丁若鍾, 丁若鏞, 李承薰, 李家煥 등 신서파 남인들은 천주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정조 당시에도 남인들의 천주교에 대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지만, 정조의 서학에 대한 교화주의 정책에 따라 쉬쉬해오던 일들이 순조 조에 들어서면서 급변하기 시작하여 기회를 잡은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책 귀작 사건’과 ‘신유사옥’이 발발한다. 결국 표면상의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시파와 소론, 남인 세력 숙청작업의 권력투쟁 양상을 띤다.

① 신유년 봄 都堂會圈에 大提學 尹行恉이 공을 錄選하려 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先朝(정조를 말함)의 遺意이다.”하였는데, 저지하는 대신이 있어서 녹선되지 못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조정의 상황이 一變하였다. 先朝가 아끼고 쓰던 신하를 죽이기도 하고 竄配하기도 하며, 여파가 미치는 바에 따라 밀치고 모함하여 거의 다 없애버렸다.³⁷⁾

② 신유년 봄에 太妃가 下諭하여, 코를 베어 멸망시키겠다[剿殄滅之]는 경계가 있었다. 정월 그믐날에 李儒修·尹持誨이 편지로 冊籠에 관한 일을 통보해 왔으므로 용이 빨리 말을 달려 도성에 들어갔다. 이른 바 책룡은 곧 5~6인의 문서가 혼잡된 것인데 그 가운데 용의 집 書札이

37) 丁若鏞. 『與猶堂全書(第1集)_詩文集』卷16. 文集_墓誌銘. 「南阜尹參議墓誌銘」. “辛酉春, 都堂會圈, 大提學(尹行恉)欲錄公曰, ‘此先朝遺意.’ 大臣有沮之者, 不果錄, 當是時, 朝象一變, 先朝嚮用之臣, 或死或竄, 餘波所及, 擠陷殆盡.”

들어 있었다. 윤행임이 그 상황을 알고서 李益運과 의논하고 柳遠鳴을 시켜 상소하여, 용을 拿問하기를 청함으로써 禍鋒을 누그러뜨리려 하였고, 崔獻重·洪時溥·沈達·李皙 등도 모두 그것을 받아들이다록 극력 권하여 轉禍爲福이 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용은 모두 듣지 않았다. 2월 8일에 兩司가 發啓하여 李家煥·丁若鏞·李承薰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모두 하옥하고, 용의 형 若銓·若鍾 및 李基讓·權哲身·吳錫忠·洪樂敏·金健淳·金伯淳 등이 모두 차례로 옥에 들어갔다. …… 용은 長鬐縣으로 定配되고 용의 형 若銓은 薪智島로 定配되었으나 若鍾 및 나머지는 모두 중형을 면하지 못하였다. 오직 이기양은 端川으로 귀양 가고, 吳錫忠은 荏子島로 귀양 갔다. 이때 惡黨이 용이 죽지 않은 것을 알고 흐트러진 문서 더미 가운데 三仇의 설을 찾아내어 어거지로 丁氏의 집 문서로 정하고 또 무함하여 드디어 若鍾에게 極律을 가하여 용의 再起의 길을 막았다. 이 三仇의 설은 故 翊贊 安鼎福의 저서에 분명 三仇의 해설이 있으니, 그것이 誣陷임이 분명하다. 이해 여름에 옥사가 더욱 만연되어 王孫 裊, 威臣 洪樂任, 閣臣 尹行恉이 모두 賜死되었다.³⁸⁾

①, ②는 모두 정약용의 글이다. 이 글은 순조 초 집권 당시 조선의 정국 변화를 잘 대변한다. 1800년 6월 28일 昌慶宮 迎春軒에서 정조가 승하하고[윤행임 저·경기도박물관 학예팀(이명래·이해형) 역(2009, 권 6. 437)], 이후 조선의 정치적 상황은 급변하게 돌아간다. 특히 ②는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의 천주교 대 탄압정책인 ‘책 귀작 사건’과 ‘신유사옥’의 내용을 담고 있다.

1801년 1월 19일 ‘冊籠事-책 귀작 사건’은 ‘신유사옥’의 전초전 격으로 신서파 남인의 핵심이었던 丁若鍾이 사건의 발단이 된다. 1801년 대왕대비의 천주교 금지령이 내리고 천주교의 탄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정약종이 책 귀작을 마른 솔가리로 덮어 나뭇짐으로 위장하여 任大仁을 시켜 黃嗣永의 집으로 옮겨놓으려다가 한성부 관원에게 적발되면서 관련자 5~6인의 문서와 정약용 등 정씨 가문의 서찰, 그리고

38) 丁若鏞, 『與猶堂全書(第1集)_詩文集』卷16. 文集_墓誌銘. 「自撰墓誌銘(集中本)」.

천주교에 관한 서적 및 周文謨(1752~1801) 신부의 편지가 공개되자, 1801년 2월 26일 결국 주도자 정약종이 이승훈, 최창현 홍교만, 洪樂敏 등과 함께 참형 당한 남인 탄압 사건이다(조광 2010, 404-416).

윤행임은 평소 정조의 남인 기용정책에 힘을 실어주며, 정약종과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³⁹⁾ 그러던 중 정약종에 의해 ‘책 귀짝 사건’이 터지고 정약종을 비롯한 이승훈, 이가환, 권철신, 홍교만, 홍낙민 등 신서파 남인 및 관련자들을 추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정약종 또한 천주교 신봉의 죄목으로 위협에 처하게 되자, 윤행임은 ‘책 귀짝 사건’에 대한 대책 회의를 위해 1월 29일 ‘책 귀짝 사건’의 처리를 경기감사 이익운과 협의한다. 윤행임은 이 사건이 확대되어 남인 일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예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책 귀짝 사건’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정약종의 체포를 요청하는 상소문을 미리 올리도록 계획하는 등 사태수습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 사건의 대책을 함께 협의했던 崔獻重, 洪時簿, 沈達와 그리고 이벽의 동생이었던 李楨도 이 계획을 찬성한다.⁴⁰⁾ 그러나 윤행임이 주축이 된 이 계획은 당사자였던 정약종의 거부로 실행되지 못한다. ①, ②에서 보여준 윤행임의 정책과 대응 방안은 당파에 관계없이 오로지 선대왕 정조의 측근 세력들을 보호하고, 그의 유지를 고수하려는 탕평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9) 신유년(1801, 순조 1) 봄 都堂會圈에 大提學 尹行恁이 공을 錄選하러 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先朝(정조를 말함)의 遺意이다.” 하였는데, 저지하는 대신이 있어서 녹선되지 못하였다.(丁若鏞, 『與猶堂全書』第1集, 「南臯尹參議墓誌銘」. “辛酉春, 都堂會圈, 大提學【尹行恁】欲錄公曰: ‘此先朝遺意.’ 大臣有沮之者, 不果錄.”) 여기서 ‘공’은 정약종의 外家 6촌 형인 南臯 尹持範을 이른다.; 제 仲父가 刑曹正郎이 되고 柳遠鳴이 正言이 되었는데, 이조판서는 과연 자신이 바라던 대로 知義禁이 되었으니 이조판서 尹行恁이다. 어제 전해주시 말씀 그대로였으므로 감사한 마음이 지극하여 무어라 비유할 길이 없습니다.(丁若鏞, 『與猶堂全書』第1集, 「與李季受【辛酉春】」. “家仲父爲刑曹正郎, 柳振玉爲正言, 而吏判果自望爲知義禁, 【吏判尹行恁】昨日所傳果然矣. 鏞感之極, 無以爲喻.”)

40) 조광은 ‘책 귀짝 사건’ 당시 남인의 실질적 지도자로 윤행임을 표현하기도 했다(조광 2010, 408).

새로운 왕권교체는 새로운 권력다툼과 서열정리를 불러일으켜 선대 왕의 측근들은 하나둘씩 제거되었다. 정조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던 정약용과 윤행임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벽파를 지지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부터 벽파 세력은 남인과 소론, 노론 시파 등 자신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을 제거하며 1805년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정권을 잡는다.⁴¹⁾ 이처럼 정치판을 새롭게 짜고자 했던 벽파와 정조의 정치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했던 윤행임과의 이해는 애초 합치되기 어려운 것이었다(노대환 2011, 294). 윤행임은 어느 당파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며, 속하길 원치도 않았다. 윤행임의 정치적 목표는 오로지 정조의 유지를 실천하는 데 있었다.

① 윤행임이 아뢰기를 “눈앞의 邪學의 일로 말씀드리자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은 사람이나 현장에서 압수한 범죄의 확증이 없는 사라에게는 더러 법을 너그럽게 적용해서, 스스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어진 정사를 위해 해롭지 않습니다. 만약 한결같이 사학이라고 지목해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는지 여부도 묻지 않고, 범죄의 확증 유무도 조사하지 않은 채 모두 법률대로 처벌한다면, 이것이 어찌 훌륭한 임

41) ‘책 귀작사건’과 ‘신유사옥’ 연루자를 통해 드러난 純祖 초반(즉위~3년) 정국의 정조 親王세력과 反王세력 구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김성운 1997, 313).

	辛酉邪獄 연루자	時僻葛藤 연루자
친정조 세력	姜彝文, 金健淳, 金伯淳, 金履白, 金翰東, 邊得中, 尹東晚, 尹長烈, 李家煥, 李格, 李基讓, 李承薰, 李儒慶, 李儒修, 李益運, 李仁行, 李鎭宅, 李集斗, 李致薰, 李喜英, 丁若鏞, 丁若鍾, 趙東運, 洪教萬, 權哲身, 吳錫忠, 俞理煥, 李學達, 李獻榮, 洪樂敏	〈賜死〉 洪樂任, 尹行恁, 恩彥君 〈流配〉 金履喬, 金履度, 金履翼, 金履載, 金載翼, 金鍾健, 朴聖泰, 朴齊家, 朴夏源, 徐有隣, 徐有防, 徐有聞, 沈魯崇, 沈象奎, 李雨晉, 李義用, 李在學, 李濟萬, 李義甲, 鄭尙愚, 洪大協, 洪志燮 〈追奪〉 金持默, 沈樂洙, 吳在文, 鄭民始, 沈頤之, 蔡濟恭 〈削版〉 李祖源, 沈基泰
반정조 세력	權裕, 金觀柱, 金魯忠, 金達淳, 金龍柱, 金元喜, 金日柱, 金鍾秀, 金鍾厚, 徐邁修, 沈魯賢, 沈煥之, 尹弼乘, 李敬臣, 李東萬, 李安默, 李榮復, 鄭日煥, 鄭在民, 趙鎮井, 洪履猷	

<표 2> 純祖 초반(즉위~3년)의 정국에 나타난 정조 親王세력과 反王세력

금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정사이겠습니까? 무릇 천지의 큰 덕을 ‘生’이라고 하는데, 산 것을 살리는 덕이 바로 천지의 이치입니다. 어진 임금은 천지의 덕을 본받아 마땅히 사람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위엄을 삼아선 부당합니다.”⁴²⁾

② 영부사 이병도가 말하기를, “역적 李祹의 하늘에 통하는 죄는 三司의 原啓 가운데 모두 있으니, 지금 다시 일을 나열할 필요가 없고 凶逆의 源委를 가지고 마땅히 우러러 奏達하겠습니다. …… 洪樂任에 이르러서는 천만 가지의 죄악이 그 유래가 본래 있었는데, 그 계획이 더욱 급해져서 儲位를 危逼한 흥계는 이미 『明義錄』에 실려 있으니, 한 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삼가 원하건대, 두 죄인에게 빨리 처분을 내리소서.” …… 예조 판서 윤행임은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이미 우러러 주청하였습니다만 돌아보건대 지금 전하께서 沖年에 嗣服하셔서 자성께서 수렴청정하고 계시니, 이러한 시기가 영종조 신묘년과 先王朝 병오년에 견주어 國勢의 위태함과 종사의 근심이 과연 어떠합니까? 신묘년의 처분은 雷霆과 같은 위엄이 赫然하였고, 병오년의 諺教는 해와 별 같은 명철하심으로 환히 계시하였습니다. 지금도 마땅히 兩聖의 밝고 올바른 처분을 본받아 빨리 王法을 시행하소서.”하였다.⁴³⁾

③ 여러 대신들이 아뢰기를, “두 역적의 죄는 위로 하늘에 통하였는데도 아직 하늘과 땅 사이에 잠시 쉬게 하였으므로, 흥패하고 추악한 무리들이 움직였다 하면 문득 서로 관련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윤행임이 선왕의 의리를 背馳하고 선왕 때 굳게 지키던 마음을 저버린 데에 이르러서는 흥낙임과 충분히 주무한 실상이 밝게 드러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대개 도역·흥낙임 및 윤행임이 한 가지 套式으로 합작한 소굴의 근원이 본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망하고 흉악한 말이 무단히 지어져 나온 것입니다. 또 나라를 원망하는 邪學의 무리가 있다는 것 또한 하나의 와전된 말에서 나온 것이니, 오늘날을 위한 방도는 마땅히 그 根本를 먼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는 이 같은 枝葉은 제거되기

42) 『承政院日記』卷97. 「純祖 元年(1801 辛酉) 3月 13日」.

43) 『純祖實錄』卷2. 「1年(1801 辛酉) 4월 25일 1번째기사」.

를 기필하지 않아도 저절로 제거될 것입니다.”⁴⁴⁾

①, ②, ③은 윤행임이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가 주도한 ‘신유사옥’에 있어 천주교 관련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장면과 윤행임을 서학교도로 몰아 정조의 이복동생인 恩彦君 李禔과 혜경궁 홍씨의 동생인 홍낙임과 함께 처벌할 것을 주청하는 대신들의 상소 내용이다.

윤행임은 홍낙임에 대한 처벌과 邪獄의 논의 과정에서 집권 세력과는 다른 의견을 펼쳤다. ①에서처럼 서학교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측면과 ②에서처럼 천주교도인 은언군과 홍낙임의 처벌에 관련해서도 영·정조 선대왕들의 선례를 통해 올바르게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지난날 홍낙임의 처벌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윤행임은 한나라 文帝의 외삼촌인 薄昭의 고사를 인용해 선왕이 역적에 대해 은전을 베푼 성덕을 찬양하며, 홍낙임의 처벌을 반대하는 뜻을 내보였던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⁴⁵⁾ 윤행임의 대응 방식은 결국 정순왕후 및 노론 벽파와 등을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경주 김씨 중심의 벽파 세력은 윤행임을 천주교와 연루시켜 제거하려 했다.

서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그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정순왕후와 벽파는 윤행임 제거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서학에 대한 탄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이를 빌미로 시파, 남인, 홍낙임 세력과 은언군을 점차적으로 제거한 뒤, 곧바로 윤행임 제거에 착수했다. 윤행임은 집권 세력의 서학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탄압과 이를 통한 정적의 제거라는 정국 운영 방침에 선왕이었던 정조의 유지를 고수하며 반발하였지만, 도리어 서학의 배후로 몰렸다. 벽파는 초기에 정조의 측근을 모두 곧바로 제거할 수 없었지만, ‘신유사옥’을 통

44) 『純祖實錄』卷3. 「1年(1801 辛酉) 5월 20일 3번째기사」.

45) 『純祖實錄』卷1. 「即位年(1800 庚申) 12월 29일 2번째기사」.

해 점차 서학에 연루시키며 제거했고, 그중의 하나가 윤행임이었다(변주승 2001, 101-106). 결과적으로 서학을 다스리는 문제를 둘러싼 윤행임의 대응방식은 실패했지만,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고, 정조의 유지를 계승하여 서학에 대한 교화 위주의 선별 처리 원칙을 펴는 윤행임의 경제적 입장과 정치적 성향은, 당대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면모로 평가할 수 있겠다.

IV. 맺음말

윤행임은 21세의 젊은 나이에 정치 생활을 시작하여 1801년 유배되어 賜死되는 약 20년간의 정치인생을 걸어왔다. 정조와의 만남은 그의 정치적 노선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얼소통’과 ‘내시노비협파’ 문제에 대해서는 오로지 정조의 탕평적 입장을 대변하는 데 힘썼고, 서학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조가 가까이했던 신서파 남인 세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비교적 온건한 대응과 교화적 정책을 택했다. 순조대로 접어든 윤행임은 ‘선왕의 남긴 뜻’을 강조하며 순조 즉위년과 원년 초기에 정국 운영의 한 축을 맡아 도승지·이조판서·대제학 등의 요직을 역임하며 정치적 국면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하였다. 윤행임이 직접 겪어왔던 정치적 삶은 고달픔이 아닐까 한다. 정적에 의해 하루아침에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르는 비정한 권력다툼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한판의 바둑과도 같다.

바둑판은 한 자를 채우지 못하지만,
 참담하게 殺活을 숨기고 있다네.
 상대하여 좋은 낮빛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초나라와 월나라 같다네.
한 판의 형세는 어디에 가까운가?
쟁탈은 갑작스런 데서 일어난다네.⁴⁶⁾

본고는 윤행임의 경제적 입장과 정치 路程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윤행임의 당색을 주로 낙론 중심의 시파나 호론 중심의 벽파로 보았지만, 윤행임은 어느 당여에도 소속되지 않고 오로지 정조와 그 정책을 철저히 수행하고 계승하는 데 힘을 기울였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성한·윤구중 사건’·‘책 귀짜 사건’·‘신유사옥’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대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三學士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尹集(1606~1637)의 후손인 윤행임의 정치적 목적은 오로지 국가와 왕에 대한 忠誠心으로 일관하였다. 이것이 벽파 호론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낙론의 시파적 정치 행동을 펼친 윤행임의 사상철학과 정치 성향이 구별되는 점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투 고 일: 2024년 08월 12일
심사완료일: 2024년 08월 22일
게재확정일: 2024년 08월 28일

46) 尹行恁. 『碩齋稿』卷1. 詩. 「碁」. “碁局不盈尺, 慘愴藏殺活. 相對好顏色, 其心如楚越. 局勢近如何, 爭奪起所忽.”

참고문헌

- 권오영. 2003. 『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 권인호. 2000. “18, 19세기 후기 성리학과 경전해석의 특성과 성과.” 『대동문화연구』37. 247-248.
- 권정원. 2009. “담헌 홍대용의 학문관.” 『동양한문학연구』29.
- 김문식. 1996. 『조선후기경학사상연구』. 일조각.
- 김성윤. 1997.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주)지식산업사. 196·238-241·303·313·351-387.
- 김윤조. 1995. “석재 윤행임 연구 - 생애와 학문 경향을 중심으로 -.” 『한문교육연구』9. 248·258-261.
- 김은숙. 2009. “석재 윤행임의 저작과 학문 경향.”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3-23.
- 김정자. 2018. “정조 후반 순조 초반 정치세력과 정국의 동향 - 정조 16년(1792)~순조 6년(1806)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총』50.
- _____. 2021. “순조 1년(1801) ‘신유옥사’와 윤행임 賜死 사건 -임시발·윤가기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61. 168-174.
- _____. 2022. “‘邪說’·‘誣告’·‘邪學’ 사건과 ‘신유옥사’ -『推案及鞫案』의 姜彝天 推鞫 事件을 중심으로 -.” 『역사와경계』122.
- 김채리. 2017. “석재 윤행임의 『論語隨筆』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희태. 2009. “조선시대 신지도 유배인물과 윤행임의 「薪湖隨筆」.” 『향토사연구』20.
- 남윤덕. 2013a. “윤행임의 「신호수필_『대학』」 해석을 통해 본 18세기 학문논쟁의 한 국면.” 『동양한문학연구』36.
- _____. 2013b. “윤행임의 淸代 초기 고증학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국학연구』23.
- _____. 2014a. “정조대 학술동향을 통해 본 윤행임의 「신호수필_『중용』」

- 해석의 특징과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86.
- _____. 2014b. “석재 윤행임의 육왕학 비판에 대한 인식형성 배경과 그 목적.” 『東方學志』167.
- _____. 2014c. “석재 윤행임의 ‘호락논쟁’에 대한 입장과 분별의 논리.” 『한국사상사학』48. 214-216.
- _____. 2016. “석재 윤행임의 ‘義理’ 중심 易學觀과 ‘四書’ 활용 양상-「경사강의」_『역』[계묘(1783)]·「신호수필」_『역』·「계사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61.
- _____. 2018. “석재 윤행임의 사서학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20.
- _____. 2020. “석재 윤행임의 『신호수필』 경사류 해석의 『역』 활용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화』92.
- _____. 2021. “석재 윤행임의 『신호수필』 경사류 해석에 나타난 『역』 활용양상 연구 - 『예기』·『좌전』·『통감절요』 해석을 중심으로 -.” 『대동한문학』68.
- _____. 2021. “석재 윤행임의 『방시한집』(상) 연구.” 『동방한문학』89.
- _____. 2024. “『맹자』 해석에 나타난 윤행임과 정약용의 인물성이론 비교 - 「신호수필」_『맹자』와 『맹자요의』를 중심으로 -.” 『동방학』51. 223-250.
- 노대환. 2011. “윤행임(1762-1801)의 정치 활동과 학문성향.” 『국학연구』19. 291·294·305-307.
- 문석윤. 2006. 『호락논쟁 형성과 전개』. 동과서.
- 박광용. 1998.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56-158·168-172.
- 박현모. 2001.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 배재홍. 1996. “조선후기 영·정조대 庶孽疏通策.” 『논문집』29. 311.
- 백승호. 2016. “석재 윤행임 한시 연구.” 『한국한시연구』24.
- 변주승. 2001. “신유박해의 정치적 배경.” 『한국사상사학』16. 101-106.
- 역사학회. 2013. 『정조와 18세기』. 푸른역사.

- 유봉학. 1995.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72.
- _____. 1998.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 _____. 2005. “정조시대 사상적 갈등과 문화의 추이.” 『태동고전연구』21. 1.
- 윤승준. 2011. “조선후기 지식인의 對淸 인식-담헌과 연암을 중심으로-.” 『한문학보』24.
- 윤행임 저·이봉래 역. 1986. 『국한문역 帶方世家言行錄-附燕行日記·命道自嘆辭-』. 시사문화사.
- _____. ·윤양호 역. 1993. 『국문번역 대방세가언행록-부록 : 윤행일기·명도자탄사-』. 성동문화.
- _____. ·전송렬 역. 2006. 『역주 方是閒輯』. 보고서.
- _____. ·경기도박물관 학예팀(이명래·이해형) 역. 2009. 『碩齋日錄 역주본』. 경기도박물관. 321·437·523-526.
- _____.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역. 2021-2023.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국역 석재고』. 보고서.
- 이경구. 1998. “영조-순조 연간 호락론쟁의 전개.” 『한국학보』24.
- 이병도. 1987.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 이원석. 2020. “정조와 윤행임의 「대학장구 서문」 해석과 인물성동이 논쟁 : 『증전추록』 분석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44.
- 이종일. 1987. “18·19세기의 서얼소통운동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58. 74.
- 이천승. 1999. “남당 한원진의 『중용』주석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사학』13.
- 이현진. 2010. “석재 윤행임의 예학과 상례 인식 : 『泣血錄』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34. 195-196.
- 정옥자 외. 1999.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07.
- 전종익. 2009. “정조시대 천주교 전래와 평등.” 『법사학연구』40. 117.
- 조 광. 2006. “조선후기 서학서의 수용과 보급.” 『민족문화연구』44. 200.
- _____. 2010. 『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 경인문화사. 404-416.
- 조성산. 2007.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140·370-386·404.

조장연. 2005. “남당 한원진의 인물성론과 그 정치적 성격.” 『한국철학논집』17.

최영성. 1995. 『한국유학사상사Ⅳ-조선후기편 하-』. 아세아문화사.

한국사상사연구회. 1994. 『인성물성론』. 한길사.

『正祖實錄』.

『純祖實錄』.

『憲宗實錄』.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司馬遷. 『史記』.

朱熹. 『朱文公問集』.

_____. 『朱子語類』.

_____. 『大學章句』.

_____. 『中庸章句』.

_____. 『孟子集註』.

胡廣. 『中庸章句大全』.

_____. 『中庸或問』.

陳建. 『學蔀通辨』.

許謙. 『讀四書叢說』.

尹行恁. 2002. 『碩齋稿』. 韓國文集叢刊 287-288. 民族文化推進黨.

_____. 2002. 『碩齋別稿[薪湖隨筆]』. 韓國文集叢刊 287-288. 民族文化推進黨.

_____. 『碩齋日錄』.

丁若鏞. 『與猶堂全書』.

正祖. 2001. 『弘齋全書』, 韓國文集叢刊 262-267. 民族文化推進黨.

_____. 『日省錄』.

洪大容. 『湛軒書』.

Abstract

The position and political path of Suk-Jae Yoon
Haeng-Im's(1762-1801) in the late Joseon Dynasty to
govern the world

Nam Yoon Deok

Full-time researcher, Gyeongnam Cultural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Instructor,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Yoon Haeng-im started his political life at the young age of 21 and walked about 19 years of political life until he was exiled and died in 1801. His meeting with King Jeongj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his political line. Regarding the issues of 'Communication about Seo-Eol' and 'Abolition about Royal and Government Slaves', he tried to represent Jeongjo's tangpyeong stance, and basically showed a strong stance toward Catholicism, but he wanted to maintain relations with the Sinseopa Namin, which Jeongjo was close to. To this end, relatively moderate responses and edifying policies were adopted. As can be seen from the political stance and response to the 'Yoo Seong-han and Yoon Gu-jong Incident', 'Book Box Incident', and 'ShinYu Persecution', one of the Three Confucian scholars Yoon-Jib, Yoon Haeng-im's political purpose was consistent with respect for the

state and the king. This can be said to be the point of contact that differentiates the ideological philosophy and political inclinations of Yoon Haeng-im, who embraced logic of the Byeokpa Horon and carried out A faction that conforms to the times political actions of the Nakron faction. This paper examines Suk-Jae Yoon Haeng-Im's economic position and political path. Until now, his party color was mainly seen as a faction that conforms to the times centered on Nakron or Horon, but he could be seen as a person who did not belong to any party and devoted his efforts to thoroughly carrying out and succeeding King Jeongjo and his policies.

Keywords: Yoon Haeng-Im's, Communication about Seo-Eol, Abolition about Royal and Government Slaves, Yoo Seong-han and Yoon Gu-jong case, Book Box Incident, ShinYu Persecution, Tangpyeong(蕩平, concept of Equality in Appointments)